

##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

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- 2025년 인증 신청기간 : 연중 접수  
\* 인증심사 : 연간 4회차 개최 예정(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)
- 2025년 인증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www.seis.or.kr)  
\* 사회적기업 포털(통합사업관리시스템) 로그인 ▶ 인증 지정관리 ▶ 인증관리 ▶ 인증신청서 제출 ▶ 인증신청서/구비서류 첨부/유급근로자 명부 작성 ▶ 인증신청서 제출
-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

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·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·단체 등을 설립하여야 합니다.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%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필요시,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진흥원(센터)을 통해 사전상담 및 안내를 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\* 단, 심사 공정성·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증 요건, 필수서류 안내 등 기본적인 내용만 상담

##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상담 안내

전국 대표번호 : 1551-2024

(해당 권역 진흥원(센터)으로 자동 연결)

###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현황

권역	구분	센터명	주소	전화번호
서울1	통합	소셜캠퍼스 온 서울(성수)	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, 9층	02-467-2516
	일반	소셜캠퍼스 온 서울(당산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6층	02-3667-8409
인천	일반	소셜캠퍼스 온 인천	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(송도동) 애니오션빌딩 11, 12층	032-858-7671
경기1	통합	소셜캠퍼스 온 경기(성남)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, 6층	031-757-2501
	일반	소셜캠퍼스 온 경기북부(양주)	경기도 양주시 덕계로 140 진산메디프라자빌딩 4, 5층	031-868-8061
강원	일반	소셜캠퍼스 온 강원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누리관 1, 2층	033-748-8661
광주	통합	소셜캠퍼스 온 광주	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, 5, 6층	062-946-2166
전남	일반	소셜캠퍼스 온 전남	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(호남동) 주식회사 KT 목포빌딩 9층	061-247-9904
전북	일반	소셜캠퍼스 온 전북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DNB빌딩 5, 6층	063-223-2506
제주	일반	소셜캠퍼스 온 제주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관 3, 4, 6층	064-749-7539
세종	통합	소셜캠퍼스 온 세종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&G세종타워A 6층	044-903-0782
대전	일반	소셜캠퍼스 온 대전	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 눈높이 사옥 3, 4층	042-489-5790
충남	일반	소셜캠퍼스 온 충남	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-29 용주프라자 3, 4, 5층	041-549-7762
충북	일반	소셜캠퍼스 온 충북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15-1 우민타워 3층	043-259-8773
대구	통합	소셜캠퍼스 온 대구	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, 11층	053-431-9826
경북	일반	소셜캠퍼스 온 경북	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) 경상북도경제진흥원 6층, 8층	054-476-6519
	통합	소셜캠퍼스 온 부산	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5, 6층	051-753-2505
울산	일반	소셜캠퍼스 온 울산	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극동방송빌딩 7, 8층	052-276-2507
경남	일반	소셜캠퍼스 온 경남	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김해대로 2367 에스엠이 김해빌딩 7층	055-338-2760
	일반		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99 지역혁신청년센터 2층	055-763-2690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
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

진흥원(본원)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-8층  
www.socialenterprise.or.kr Tel 031-697-7700 Fax 031-697-7889



# 2025년도 사회적기업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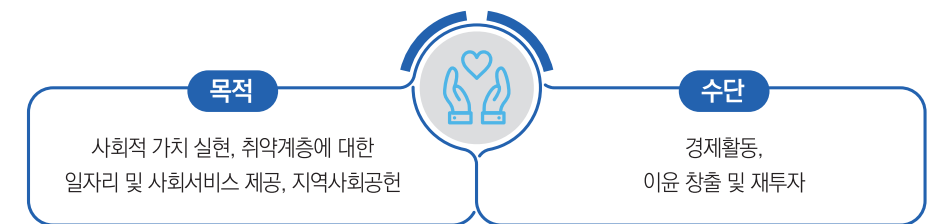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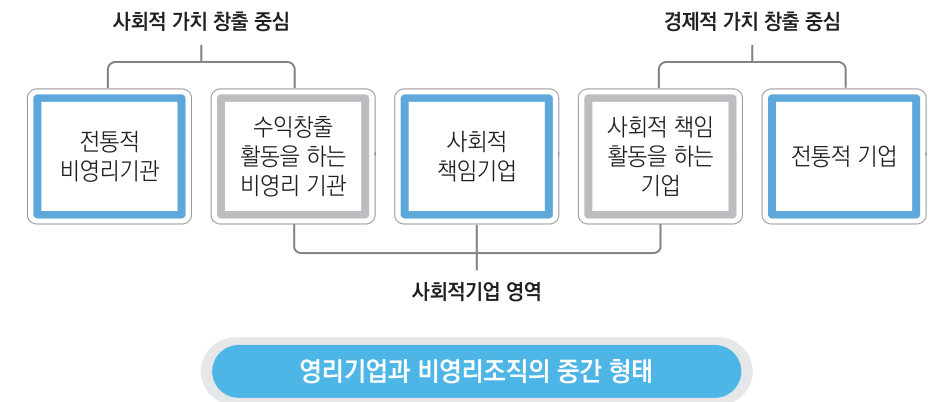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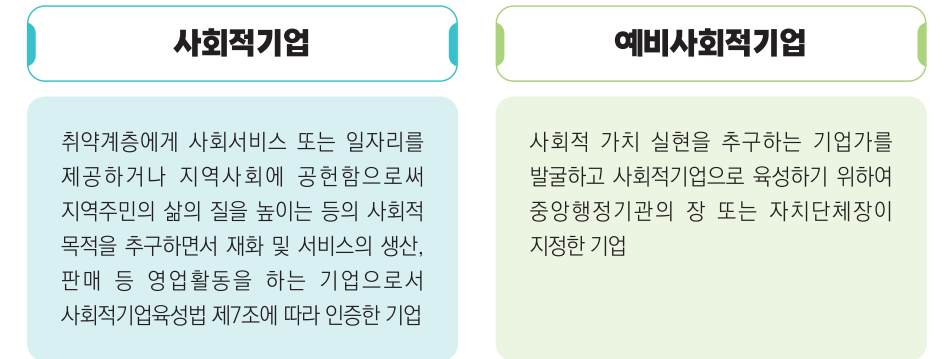
SOCIAL ENTERPRISE GUIDE



## 사회적기업이란

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
-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,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



##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

### 〈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〉

사회적기업	구분	예비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 육성법	법령	조례 또는 규칙, 지침
고용노동부 장관 인증	주관	광역자치단체장, 중앙행정기관장 지정
① 조직형태	요건	① 조직형태
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		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)
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·사회서비스 제공 등)		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(취약계층 고용·사회서비스 제공 등)
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		④ -
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(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)		⑤ -
⑥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		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
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		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상시 접수	신청	연중 일정 공고

### 1 조직형태

- ✓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
- ✓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

• 주식회사	• 합명회사	• 농업(어업)회사법인	• 사단법인	• 사회복지법인
• 유한회사	• 합자회사	• 영농(영어)조합법인	• 재단법인	• 공익법인
• 유한책임회사	• 합자조합	• (사회적)협동조합	• 비영리민간단체	

\*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

### 2 유급근로자 고용

- ✓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
- ✓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
  - \* 단,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신청일 직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 고용
  - \*\*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,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함
- ✓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

### 3 사회적 목적의 실현

- ✓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
- ✓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

사회서비스 제공형	↓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일 것
일자리 제공형	↓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% 이상일 것
지역사회 공헌형	↓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,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가형: 일자리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: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20% 이상</li> <li>- (가형: 서비스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: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</li> <li>- (나형) 지역의 빈곤·낙후·소외·재난·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</li> <li>- (다형)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</li> </ul>
혼합형	↓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일 것
기타 (창의·혁신)형	↓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하되,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 동 유형으로 불인정</li> </ul>

- ✓ (취약계층 정의)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,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(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조)
  -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, 외국인근로자,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, 학교폭력 피해자, 학교 밖 청소년, 중증질환자,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

취약계층이란			
• 저소득자	• 청년,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	• 한부모가족지원법상보호대상자	• 기타(장기실업자, 수형자, 소년원생, 보호관찰 청소년, 노숙인, 약물 등 중독자, 선천성 또는 후천성 질환 치료자, 여성가장, 난민, 보호종료아동, 청소년쉼터 등에 입퇴소한 자 등)
• 고령자	• 장애인	• 성매매피해자	
• 장애인	• 북한이탈주민	• 가정폭력 피해자	
• 성매매피해자	• 가정폭력 피해자	• 범죄구조피해자	

사회서비스란			
• 교육	• 사회복지	• 청소년 등 사업시설관리	• 가사지원
• 보육	• 환경	•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	• 산림보전 및 관리
• 보건	• 문화예술, 관광 및 운동서비스	• 간병 및 개인서비스	• 기타

사회적가치지표(SVI) 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개요)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·평가하는 지표</li> <li>• (활용) 사회적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의 사업 연계 등 활용</li> <li>• (구성) 총 14개 지표(사회적 성과(9개 지표, 60점), 경제적 성과(4개 지표, 30점), 혁신성(1개 지표, 10점) 등 100점 만점) 구성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, 기타(창의·혁신)형은 상기 지표 중 5개 지표(3, 4, 5, 6, 14번만 측정)</li> </ul> </li> </ul>

###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- ✓ 사회적기업은 근로자,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함
  - \* 법령상 의견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(불가피한 경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 인정 가능)

- ✓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일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

###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- ✓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% 이상이어야 함
  - \* 단,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
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	노무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(≠매출액)</li> <li>* 보조금, 기부금 및 단순 지원금 등은 해당하지 않음</li> <li>•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포함 : 급여, 제수당, 상여금, 일용임금, 퇴직금(지급금)</li> <li>• 제외 : 교육훈련비, 퇴직급여충당금,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, 용역비 등</li> </ul>

- ✓ 단, 자본 완전잠식,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(매출액의 규모, 수익구조 등)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

### 6 정관의 필수사항

- ✓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(10가지)을 반드시 갖춰야 함
- ✓ 필수사항 :

① 목적	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
② 사업내용	⑦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
③ 명칭	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
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⑤ 기관의 의사결정방식	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#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

- ✓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
- ✓ 정관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조건 개선, 사회공헌사업, 시설투자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
  - \*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 등의 경우에 해당함
  - \*\*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, 지정 이후 배분 가능한 이윤 사용내역 검토

## 사회적기업 지원제도

지원제도	지원 내용	지원 대상		
		예비	인증	
경영 지원	유망기업 스타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(디딤돌→도약→성숙기) 맞춤형 지원</li> <li>* 디딤돌: 초기 경영지원(인사·노무·회계 등), 도약: 사업화·전문화 지원(R&amp;D·판로·마케팅 등), 성숙기: 규모화 지원 및 공공·민간 상생모델 구축</li> </ul>	○	○
	모태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(예비)사회적기업 등에 투자</li> </ul>	○	○
	시설비 등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용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</li> <li>- 미소금융, 중소기업 정책자금,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,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</li> </ul>	△ (미소금융 제외포함)	○
판로 지원	온·오프라인 매장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e-store36.5 입점 지원,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, 전국 스토어 36.5 매장 입점 지원(85개소)</li> </ul>	○	○
	소셜벤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·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</li> </ul>	-	○
	지역특화 스타상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 대학·자치단체·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화 상품(서비스)를 발굴하고 '지역 스타 상품'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</li> <li>* '25년 6개 권역별 지원 예정</li> </ul>	-	○
	맞춤형 마케팅 지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 코칭,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</li> </ul>	-	○
공공기관 우선구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·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</li> <li>- 대상) 국가기관, 자치단체, 공기업, 준정부기관 등 (24년 848개소)</li> </ul>	-	○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적기업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그 후 2년 50% 감면</li> <li>• 취득세 50% 감면, 재산세 25% 감면</li> <li>•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%, 그 후 2년간 50% 감면</li> <li>•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</li> </ul>	-	○

## 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

구분(관련 법령)	내용
정관 등 변경신고 (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(정관등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적기업은 정관이나 규약 등(정관 등)의 기재사항 변경할 경우,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정관 등 변경 신고하여야 함</li> <li>• 사회적기업은 지부 설립, 폐업이 발생하였을 경우,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지부 설립 및 폐업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</li> <li>- 관련 제출서류 등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'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' 참고</li> </ul>
사업보고서 (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(보고 등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과 10월(연 2회)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</li> <li>- 관련 제출서류 등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'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' 참고</li> <li>*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(연 1회) 제출</li> </ul>
인증서 재발급 (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(인증서의 재발급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적기업은 기관명, 대표자, 소재지, 조직형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,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함</li> <li>- 관련 제출서류 등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'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' 참고</li> <li>*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서 재발급 관련 공지사항 게시를 참고</li> </ul>